|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심의 방법**  2007년 9월 24일 해관총서 령 제166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해관의 행정재심의를 규율하고 행정 분쟁, 법치해관의 건설, 사회주의와 조화사회 구축에서의 행정재심의 제도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이하 행정재심의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이하 행정재심의 실시조례라 함)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해관에서 행정재심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각급 해관의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본 해관의 법제업무를 감당한 기구(이하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라 함)에서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 지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 전직요원을 배치, 충실, 조제하여 행정재심의 업무에 재정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사건 처리능력과 담당업무가 서로 어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  (2) 유관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조사 및 증거를 취득하고 문건과 자료를 열람하고 행정재심의 청문회를 조직  (3) 행정재심의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절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심의 결정을 작성하고 행정재심의 조정을 주최하며 행정재심의 화해를 심사, 허락  (4) 해관 행정배상 사항을 처리  (5) 행정재심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 행정재심의로 결정한 강제집행 또는 인민법원에 신청한 강제 집행사항을 처리  (6) 신청인이 이 방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처리하거나 이첩  (7) 하급 해관의 행정재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 의견을 제출  (8) 하급 해관 및 그 부문과 업무직원이 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소정의 기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건의를 제출  (9)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소사항을 처리하거나 조직 처리  (10) 행정재심의, 행정응소, 행정배상 사건의 통계와 비안(備案) 사항을 처리  (11) 행정재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하고 지체 없이 유관기관과 부서에 건의를 제출하며,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행정재심의기관에 보고  (12) 행정재심의 업무와 관련되는 기타 사항.  **제5조** 해관 행정재심의 업무에 전직 종사하는 인원(이하 행정재심의요원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2) 양호한 정치, 업무소질을 갖추어야 한다.  (3) 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했거나 대학교 비 법률전공이나 법률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4) 해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5) 고시, 검정에 합격되어 해관총서가 발급한 조사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각급 해관의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요원이 국가 사법고시에 참가하도록 지지하고 권장해야 하며, 변호사자격 또는 법률 직업자격을 취득한 해관 업무직원은 우선적으로 행정재심의요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6조** 행정재심의요원은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재심의 직무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직책 수행에 필요한 업무조건을 향유한다.  (3) 행정재심의 업무에 건의를 제기한다.  (4) 교육에 참가한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의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행정재심의요원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준하여 행정재심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3) 직무에 충실하고 직책을 다해야 하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5) 국가기밀, 상업비밀, 해관의 업무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6)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7)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의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직책을 수행할 때 합법, 공정,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대중에 편의를 제공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법 행정하고 잘 못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바로잡음으로써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 규장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홍보란, 게시판, 해관 포털사이트 등의 열람에 편의한 형식을 통해 본 해관이 관할하는 행정재심의 사건의 수리범위, 수리조건, 행정재심의 신청서 양식, 행정재심의 사건 심리절차 및 행정재심의 결정의 집행절차 등 사항을 공포해야 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사건 처리상황 조회기제를 구축, 공포하여 신청인, 제3자들이 제때에 그의 행정재심의 권리, 의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인, 제3자의 행정재심의 수리조건, 심리방식 및 기한, 행정재심의 처리결정을 내린 이유와 의거, 행정재심의 결정의 집행 등 행정재심의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2장 해관의 행정재심의 범위**  **제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관의 경고 또는 벌금, 화물이나 물품, 운송수단과 특제설비 몰수, 몰수 불가능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대등 가치 추징, 불법소득 몰수, 관련 업무 종사의 당분간 중지 및 등록등기 취소, 기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특제설비를 몰수하는 해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해관의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4) 관련 화물, 물품, 운송수단, 장부, 증표 또는 기타 재산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표 등의 봉인과 관련한 해관의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5) 보증금 수취와 관련한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6) 해관의 강제적 집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7) 납세의무자 확정, 과세가격과 상품분류 확정, 원산지, 적용세율 또는 환율의 확정, 세금 감면 또는 세금보완 납부, 환급, 체납금 징수 또는 세금 징수방식의 확정, 납세지 확정 등의 기타 세금징수와 관련되는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이하 납세분쟁이라 함)가 있는 경우  (8)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해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 심사비준 사항을 신청하였으나 해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해관의 운송수단과 장소 검사, 화물과 물품 검사 또는 그가 취한 기타 감독관리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10) 해관의 반송 명령, 통관불허, 시정 명령, 해체 또는 매각 명령 등의 행정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1) 해관의 검사결정이나 기타 검사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12) 해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당해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13) 해관이 법에 따라 지재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해관의 지재권 보호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14) 해관이 법에 따라 통관 수리, 통과 허락 등 해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해관이 법을 어기고 지연신고과태료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불법 요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해관이 인신 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정부 정보공개 업무 중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해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항 제(7)호에서 규정한 납세분쟁 사항이 있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해관법의 규정에 따라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해관의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해관 업무직원이 해관의 처분 또는 기타 인사 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진정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관의 행정재심의 신청**  **제1절 신청인과 제3자**  **제11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관의 행정재심의 신청인으로 된다.  **제12조** 행정재심의 신청 권한이 있는 공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친족이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심의 신청 권한이 있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법 위반 행위를 행한 후 합병, 분립 또는 기타 자산재편 상황이 존재하여 해관이 원 법인, 조직을 당사자로 행정처벌을 가한 동시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조직을 집행대상자로 하는 경우 피집행자는 스스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심사대상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하여 제3자로 행정재심의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기간에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심사대상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제3자로서 행정재심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자로 행정재심의에 참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와 심사대상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입증 책임을 진다.  제3자의 행정재심의 참가에 동의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자 행정재심의 참가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자가 행정재심의에 참가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재심의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신청인, 제3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재심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위탁대리인이 행정재심의에 참가할 때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위탁인의 성명이나 명칭. 위탁인이 법인이거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해야 한다.  (2) 대리인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및 우편번호  (3) 위탁사항과 대리기간  (4) 대리인의 행정재심의 신청 대행, 변경, 철회 또는 행정재심의 조정 참여, 행정재심의 화해 달성, 행정재심의 청문 참가, 증거자료 제출, 행정재심의 법률문서 접수 등의 대리권한  (5) 위탁 일시 및 위탁인의 기명날인.  공민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서면으로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탁할 수 있다. 공민이 구두로 위탁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이를 확인하고 사건서류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신청인, 제3자가 위탁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피신청인과 행정재심의기관**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이 피신청인으로 된다.  **제17조**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의 직상급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  해관총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  **제18조** 2개 이상의 해관이 공동으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며 그 공동의 직상급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  **제19조** 해관이 기타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해관과 기타 행정기관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며 해관과 기타 행정기관의 공동 직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해관총서와 국무원 기타 부서와 공동으로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해관총서 또는 국무원 기타 부서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 국무원 기타 부서에서 공동으로 처리결정을 내린다.  **제20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하급 해관이 상급 해관의 승인을 얻고 자기의 명의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상급 해관을 피신청인으로 한다.  해관법과 관련 행정법규, 해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직속 해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예속 해관장의 승인을 얻고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는 직속 해관을 피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해관이 설치한 파출기구, 내설기구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행정법규의 수권을 얻지 않고 스스로 대외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해관을 피신청인으로 하며 당해 해관의 직상급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  **제3절 행정재심의 신청기한**  **제22조** 해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행정재심의 권리, 행정재심의기관 및 행정재심의 신청기한을 알려주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의 규장에 따라 하급 해관이 상급 해관의 승인을 얻고 스스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상급 해관을 피신청인으로 하도록 알려주고 상응하는 행정재심의기관도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체적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심의 신청기한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당장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 수신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문서를 법에 따라 유치 송달하는 경우 송달인과 증인이 송달영수증에 서명한 유치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4)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문서를 우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우편물 영수증에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우편물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배달 수취통지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5) 구체적 행정행위를 법적 통고형식으로 수신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6) 피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할 때 관련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보충 고지한 경우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보충 고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7) 피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관련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그가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체적 행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관련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률문서를 송달해야 하나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당 구체적 행위를 모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정 신청기한을 그르친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계속 계산한다.  **제2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이 법에 따라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방법 제9조 제1항 (8)호, (16)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기한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에 직책 수행기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한 수행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직책 수행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직책수행 독촉신청을 받은 후 60일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긴급한 상태에서 해관에 인신권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정직책 수행을 요구하였으나 해관이 제때에 수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기한은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9조 제1항 (7)호에서 규정한 납세분쟁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행정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여 신청인이 다시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인민법원의 기각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까지는 행정재심의 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관이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할 때 이미 신청인에게 먼저 해관의 행정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고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절 행정재심의 신청의 제출**  **제26조** 신청인이 서면으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송, 팩스,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해관의 공고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행정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소, 팩스번호, 인터넷 메일주소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청인이 부동한 서면 신청방식을 선택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신청인이 서면으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의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기본상황. 여기에는 공민의 성명, 성별, 나이, 근무단체, 주소, 신분증번호, 우편번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위가 포함된다.  (2) 피신청인의 명칭  (3) 행정재심의 청구사항, 행정재심의 신청이 의거하는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  (5) 행정재심의 신청 일자.  **제28조** 신청인이 구두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이 방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당장에서 《행정재심의 신청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대조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낭독해야 하며, 아울러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은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법정직책 수행을 신청한 적이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행정재심의와 함께 배상신청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 침해를 받아 손실을 입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이 방법 제23조 제5항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30조** 신청인이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때 피신청인을 잘 못 적은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변경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변경하는 기간은 행정재심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신청인이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의거한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심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때 함께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할 때 그 구체적 행정행위가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해관의 행정재심의 수리**  **제32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신청이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1) 명확한 신청인과 규정에 부합되는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청구내용과 이유가 있는 경우  (4) 법정 신청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5) 이 방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6)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경우  (7) 기타 행정재심의기관이 아직 동일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에서도 아직 동일 주체, 동일 사실의 행정소송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부합되어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와 《행정재심의 답변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에는 수리일자, 합의요원 또는 사건 심리요원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피와 청문회 소집을 신청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답변통지서》에는 수리일자, 답변을 제출하는 요구, 합의요원이나 사건 심리요원을 기재하고 피신청인의 기피 신청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 불수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신청 불수리 결정서》에는 수리거부 이유와 법률의거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타 도경을 고지해야 한다.  **제33조** 행정재심의 신청 자료가 완비하지 않거나 서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당해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정하게 해야 한다. 보정통지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서 중 수정, 보충이 필요한 구체 내용  (2) 보정이 필요한 관련 증명자료의 구체적 유형과 증명대상  (3) 보정기간.  신청인은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필요한 보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심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이 방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행정재심의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신청인이 팩스, 전자메일 방식으로 행정재심의 신청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신청인이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한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인에게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 자료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35조**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동시에 본 해관이 수리하는 행정재심의 신청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접수한 행정재심의 신청 일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취급인원이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제출인의 서명 확인을 받은 일자, 우편으로 수취했거나 기타 단위,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서명 확인한 일자, 신청인이 팩스나 전자메일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팩스를 접수한 날 또는 해관 인터넷 전자메일 시스템에 기재된 수신 일자에 준한다.  **제36조**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만 본 해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심의 신청은 심사기한 내에 관할권이 있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넘기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당장에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서명 또는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7조** 신청인이 동일 사항을 가지고 2개 또는 그 이상의 유권 수리 해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을 먼저 접수한 해관이 수리하며, 행정재심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해관에서 10일 이내에 협상을 거쳐 확정한다. 협상 미결인 경우에는 그 공동의 직상급 해관이 10일 내에 수리 해관을 지정한다. 협상으로 확정하거나 수리해관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심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후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경우 직상급 해관은 신청인의 신청 또는 그 직권에 따라 먼저 수리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해도 여전히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게 기한부 수리하도록 명령하고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 명령통지서》를 발급한다. 필요시 직상급 해관은 직접 수리하고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 명령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원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송달할 수 있다. 직상급 해관은 심사를 거쳐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거부 결정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석을 잘해야 한다.  **제39조** 아래의 상황은 행정재심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마땅히 답변을 하거나 기타 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해관 업무직원 개인의 불법,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고소하거나 또는 해관 업무직원의 업무 태도, 자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해관의 업무 정책, 작업제도, 작업방식 및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해관의 업무처리 효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행정처벌에서 인정한 사실, 적용 법률 및 처벌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경제부담이 어려워 처벌 감면을 청구한 경우  (5)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해관의 규장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 대한 해답을 청구한 경우.  **제40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해관은 구체적 행정행위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재심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 집행 정지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4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신청한 행정재심의 신청일자를 정식 수리일자로 한다.  (1) 2개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각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동일 신청인이 동일 해관의 한 개 이상의 같은 유형 또는 관련성이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각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5장 해관의 행정재심의 심리 및 결정**  **제1절 행정재심의 답변**  **제42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행정재심의 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심의 신청기록 사본과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관련 자료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43조** 피시청인은 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심의 신청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행정재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초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답변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위  (2) 피신청인이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사실, 의거, 이유 및 법률적 의거  (3)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신청요구, 사실,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  (4)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유지, 변경, 취소 또는 불법확인 건의, 행정재심의 신청 기각 건의, 행정재심의 조정 실시 등의 답변의견  (5) 답변 일자.  《행정재심의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철해야 한다.  **제44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재심의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행정재심의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45조** 행정재심의 사건에 대한 답변은 피신청인의 법제업무 담당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해관총서가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해관총서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 구체적 행정행위 관련 사항을 처리한 부문이나 기구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당초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행정재심의 심리**  **제46조** 해관 행정재심의 사건은 합의제 심리를 실시한다. 합의요원은 최소 3인의 홀수여야 한다. 합의요원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가 지명한 행정재심의요원이 담당하거나 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선임하거나 특별히 초청한 기타 전문지식을 구비한 인원이 담당한다.  피신청인의 소속인원은 합의요원으로 될 수 없다. 해관총서가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해관총서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원 구체적 행정행위 처리부문의 인원은 합의요원으로 될 수 없다.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 줄거리가 간단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해관 행정재심의 사건은 합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행정재심의요원이 심리에 참가해야 한다.  **제4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는 1명의 행정재심의요원을 주심으로 지명하여 구체적 행정재심의 사건 사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아울러 그가 인정한 사건 사실의 진실성과 적용 법률의 정확성에 대해 주요 책임을 부담한다.  합의요원은 재심의를 거쳐 조사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고 아울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합의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제출한 합의의견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8조**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합의요원 또는 사건 심리요원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행정재심의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요원 또는 사건 심리요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합의요원 또는 사건 심리요원 본인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는 합의요원 또는 사건 심리요원이 기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요원의 기피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의 기피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49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사건을 심리할 때 유관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상황을 조사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실사를 통해 증거확인을 할 수 있다.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 줄거리가 간단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사건은 서면 심사방식을 통해 심리할 수 있다.  **제50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유관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조사, 증거를 취득할 때에는 관련 문건과 자료를 열람, 복제, 인출하고 관련 인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조사, 증거 취득 시 행정재심의요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하며, 아울러 주동적으로 관련 인원에게 조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피조사단위와 인원은 행정재심의요원의 업무에 협조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정황조사, 의견청취는 기록으로 남기고 피조사인원과 행정재심의요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특별 사항과 관련되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제3자는 스스로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감정을 받거나 또는 행정재심의기구에 신청하여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도 있다. 감정비용은 신청인, 제3자가 부담한다.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심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감정기구에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감정은 국가가 인가한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52조**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심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3조** 신청인, 제3자는 피신청인의 서면답변, 제출한 구체적 행정행위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해관의 업무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신청인, 제3자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여건이 구비된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전문 접대실이나 사건서류 열람실을 설치하고 상응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54조** 신청인, 제3자의 관련 자료 열람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인, 제3자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열람 요구를 제기한다.  (2)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열람시간을 확정한 후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앞당겨 통지한다.  (3) 열람 시 신청인, 제3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열람 시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업무직원이 현장에 나와야 한다.  (5) 신청인, 제3자는 열람 자료의 내용을 사록할 수 있다.  (6) 신청인, 제3자는 열람 자료를 개찬, 훼손, 해체 또는 교체하거나 휴대하거나 또는 내용을 증가하지 못한다.  **제55조** 행정재심의기간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행정재심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를 중지하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과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고 그 근친족이 아직 행정재심의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이 행정재심의 참가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행정재심의에 참가할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아직 권리의무 승계인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4)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인, 피신청인이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행정재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6) 사건이 법률적용 문제와 관련되어 유권기관의 해석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사건 심리가 기타 사건의 심리결과를 의거로 해야 하나 기타 사건의 심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경우  (8) 신청인이 이 방법 제31조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제출하여 유권 처리 해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 중에 있는 경우  (9) 행정재심의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재심의 중지 원인이 제거된 후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지체 없이 행정재심의 사건 심리를 회복하고 《행정재심의 심리 회복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절 행정재심의 청문**  **제5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청문 방식을 취해 심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청문 요구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사실에 대한 분쟁이 비교적 큰 경우  (3) 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용의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 사안이 중대, 복잡하거나 분쟁 표적가치가 비교적 큰 경우  (5)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5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청문통지서》를 작성하여 청문회 소집일시, 장소, 구체적 요구 등 사항을 사전에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자가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청문회의 소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청문회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소재지에서 소집할 수도 있고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지에서 소집할 수도 있다.  **제59조** 행정재심의 청문회는 공개 소집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상업비밀, 해관의 업무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개 소집하는 행정재심의 청문회가 청문회 장소 등의 원인으로 방청 인수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광범위하게 주목하고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법제 선전교육에 유리한 행정재심의 사건의 공개 청문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서 계획적으로 청중을 조직하여 방청하게 하거나 또는 유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감찰부서, 감사부서, 신문단위 및 기타 단위의 인원을 요청하여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행정재심의 청문요원은 최소 3인의 홀수를 실시하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책임자가 확정하며, 그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청문회를 주최하게 한다. 청문회는 별도로 전문 서기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61조** 행정재심의 청문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주최인이 청문회 개시를 선포하고 청문회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청문회 참석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2) 청문회 참석자들에게 청문요원 및 서기원의 기피여부를 물어보고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낭독하고 그 주요 이유를 진술한다.  (4) 피신청인은 행정재심의 신청에 대해 답변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하게 된 사실의 의거, 이유 및 법률의거를 진술하고 입증을 한다.  (5)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신청인, 제3자는 피신청인의 입증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입증으로 반박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제3자의 반증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입증으로 반박할 수 있다.  (7) 증인의 현장 출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증인의 신원 등 기본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8) 청문 주최인과 기타 청문요원이 질문한다.  (9)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가 이의가 없는 증거와 증명한 사실은 주최인은 당장에서 인정하며, 이의가 있고 또한 사건 처리결과와 관련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주최인은 당장에서 또는 사후에 합의를 거쳐 인정해야 한다.  (10)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는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법률 등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다.  (11)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가 마지막 진술을 한다.  (12)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가 청문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장에서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청문회 기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장에서 수정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행정재심의 청문기록과 청문에서 인정한 사실은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의거로 해야 한다.  **제62조** 행정재심의 참가자가 청문회 현장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주최인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기한을 정해서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로 조사, 대질하거나 청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참가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당장에서 대질할 수 없는 경우 주최인은 당장에서 사후에 조사, 대질하거나 다시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선포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참가자가 청문회 후에 한 입증이 대질을 거치지 않았거나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재조사 인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증거로 될 수 없다.  **제4절 행정재심의 부대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제63조** 신청인이 이 방법 제31조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그 규정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면 30일 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당해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 규장과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  (2) 법에 따라 당해 규정이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의거로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3)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고지.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추상적 행정행위 심사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4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제출한 관련 규정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상급 해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처분권한이 있는 상급 해관에 넘기는 경우 행정재심의 관련 상황, 당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상황, 당해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2) 처분권한이 있는 기타 행정기관에 넘기는 경우 이첩공문에 행정재심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당해 규정의 적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65조** 처분권한이 있는 상급 해관은 60일 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당해 규정의 합법, 유효여부를 확인  (2) 법에 따라 당해 규정이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 의거로 될 수 있는 지를 확인  (3) 《추상적 행정행위 심사고지서》를 작성하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관,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송달.  **제66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때 그 구체적 행정행위가 의거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방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절 행정재심의 결정**  **제6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사건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관 책임자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린다.  **제68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행정재심의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복작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2) 행정재심의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4) 제3자가 행정재심의에 참가하는 경우  (5) 신청인, 제3자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재심의기간을 연장 시에는 《행정재심의 심사기간 연장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9조** 구체적 행정행위 인정에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의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적법하고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70조** 피신청인이 법정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일정한 기한 내에 그 법정 직책을 수행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제71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하거나 또는 그 불법을 확인해야 한다.  (1) 주요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적용 의거가 오류인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직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  (5) 구체적 행정행위가 분명히 부당한 경우.  **제72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불법을 확인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법률, 행정법규, 해관 규장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해관 규장에 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하는 기한은 60일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신청인의 다시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3조** 피신청인이 이 방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행정행위를 행하게 된 이거, 증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구체적 행위는 증거, 의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74조** 아래의 행정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인정한 사실이 불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나 분명히 부당하거나 또는 적용 의거가 오류인 경우  (2) 인정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나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심리를 거쳐 사실이 규명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제75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청구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제76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이 방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아래의 상황은 제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청인에 대해 더욱 불리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2)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한 법률의거가 틀려 정확한 법률의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이 새로운 사실을 규명한 후 새로운 사실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해관 규장의 강제적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해 더욱 불리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해 더욱 불리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제7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2) 제3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3)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신청 청구사항, 사실 및 이유  (5) 피신청인이 답변한 사실, 이유, 증거 및 의거  (6) 행정재심의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응하는 증거  (7)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린 구체적 이유와 법률적 의거  (8) 행정재심의 결정의 구체적 내용  (9)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한과 구체 관할법원  (10)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린 일자.  《행정재심의 결정서》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결정서》는 일단 송달되었다면 즉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 행정재심의요원은 행정재심의에서 인정한 사실, 증거,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 의거를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가 《행정재심의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이외에 관련 이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기타 방식으로 송달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가 《행정재심의 결정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행정재심의요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신청인과 제3자의 동의를 얻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출판물, 해관 포털사이트, 해관 공고란 등 방식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 행정재심의 법률문서를 공포할 수 있다.  **제78조**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한 후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결정서》에 보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행정재심의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결정 보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해관에서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수리한 후, 피신청인이 상응하는 법정직책이 없거나 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당해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이미 법정 직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 행정재심의 신청이 수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직상급 해관이 당해 행정재심의기관에서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에는 심리를 회복하도록 명령한다.  **제80조**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동의를 얻고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동일 사실과 이유로 다시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이 그의 진실한 의사표시에 위배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1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피신청인이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심의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2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의는 종료된다.  (1)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하고자 요구하여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서 이를 허락한 경우  (2)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고 근친족이 없거나 그 근친족이 행정재심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심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화해를 달성하고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  (5) 신청인이 그 인신자유를 단속하는 해관의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후, 신청인의 동일 불법행위에 범죄용의가 있어 당해 인신자유를 단속하는 행정적 강제조치를 형사구속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해관의 재산억류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후 신청인의 동일 불법행위에 범죄용의가 있어 당해 재산억류 행정적 강제조치를 형사압류로 변경하는 경우  (6) 이 방법 제55조 제1항 (1)호, (2)호, (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중지한 후 만 60일이 되어도 행정재심의 중지 원인이 제거되지 못한 경우  (7) 신청인이 팩스, 전자메일 형식으로 행정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심의를 종료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종료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절 행정재심의 화해 및 조정**  **제8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에서 규정한 자유 재량권에 의거하여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후,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토대에서 자율적으로 화해를 달성할 수 있다.  **제84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화해를 달성한 경우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서면 화해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해합의서에는 행정재심의 청구사항, 사실, 이유 및 달성한 화해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85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해합의서를 심사하고 화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확실하며 화해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해를 허락해야 하며, 동시에 행정재심의 사건 심리를 종료해야 한다.  화해를 허락하고 행정재심의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종료결정서》에 화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86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허락을 거쳐 화해를 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화해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8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화해 허락을 얻고 행정재심의를 종료한 후 신청인이 동일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심의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화해가 자율원칙을 위반했거나 화해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 규장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자율, 합법적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의 규장에서 규정한 자유 재량권에 의거하여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2) 행정배상, 배상 검사 또는 행정보상 분쟁.  **제89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주최하는 조정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조정은 사건의 사실규명을 바탕으로 실시해야 한다.  (2)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3) 조정은 공정, 합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조정결과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 규장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률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5) 조정결과가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90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주최하는 조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 동의여부를 물어본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조정을 시작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조정 방안을 제출한다.  (5) 조정 합의를 달성한다.  조정기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명확히 조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조정을 종료한 후 신청인, 피신청인이 다시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허락해야 한다.  **제91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2)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인이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청구사항, 사실 및 이유  (4) 피신청인이 답변한 사실, 이유, 증거 및 의거  (5) 행정재심의가 인정하는 사실과 상응하는 증거  (6) 조정을 실시한 기본상황  (7) 조정결과  (8) 신청인, 피신청인이 조정서를 이행하는 의무  (9) 일자.  《행정재심의 조정서》에는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조정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92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면 화해합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화해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행정재심의 조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그것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달성한 화해합의서가 이 방법 제89조 제(4)호, (5)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화해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방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3조** 조정을 거쳐 화해합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행정재심의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지체 없이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절 행정재심의 결정의 집행**  **제94조**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서, 행정재심의조정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지연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이행 령을 내리도록 행정재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피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서, 행정재심의조정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한부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기한부 행정재심의결정 이행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95조** 신청인이 법정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관의 행정재심의 결정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해관의 행정재심의 결정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에서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해관의 행정재심의 결정은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을 지명하여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해관은 지체 없이 집행상황을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96조** 신청인이 행정재심의 조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해관이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6장 해관의 행정재심의 지도 및 감독**  **제97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직권의 권한에 따라 행정재심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98조** 상급 해관은 하급 해관의 행정재심의 직책수행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고 정기적 검사, 표본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하급 해관의 행정재심의 업무 실시상황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해야 한다.  해관이 본 해관 또는 하급 해관의 행정재심의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제99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기간에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을 어긴 것을 발견했거나 사후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의 법 집행행위 시정, 법 집행업무 개선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행정재심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련 행정 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사후처리를 잘 한 상황보고서를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00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행정재심의 기간에 법률, 행정법규, 규장 실시 중의 보편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입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행정재심의 기간에 해관의 법 집행 중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 《행정재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본 해관의 유관 업무부서에 법 집행 개선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 해관의 행정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건의서》를 본급 해관의 행정수반에게 송부해야 한다. 직상급 해관의 처분권한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직상급 해관에 제도개선과 법 집행 개선에 대한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1조** 각급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처리한 행정재심의 사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화해합의를 달성한 후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를 종료시키거나,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쳐 화해를 달성하여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관총서 행정재심의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문서를 당해 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102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사건을 처리할 때 지체 없이 발급한 법률문서를 해관 행정재심의정보시스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103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매 반년에 본 해관과 직상급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행정재심의 업무상황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 해관총서 행정재심의기구는 매 반년별로 행정쟁의요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재심의요원의 업무소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기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해관 행정재심의요원에 대한 교육을 조직할 수 있다.  **제105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국가이익,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해관의 의법 행정과 사회조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실적이 뚜렷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해관계통 장려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정기적으로 행정재심의업무를 총화하고 행정재심의 업무에서 실적이 뚜렷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해관계통 장려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106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 해관 행정재심의기구, 행정재심의요원이 행정재심의법 제34조, 제35조,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제64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 피신청인이 행정재심의법 제36조, 제37조,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제6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8조** 상급 해관이 하급 해관 및 관련 업무직원이 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불법행위 처벌건의서》를 작성하여 유관 해관에 건의해야 하며, 해당 해관은 행정재심의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동시에 처리결과를 상급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관 행정재심의기구가 유관 해관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긴 것을 발견한 경우 《불법행위 처벌건의서》를 작성하여 인사, 감찰부서에 제출하여 관련 책임인원을 처분하도록 건의해야 하며, 또는 관련인원의 불법 사실자료를 직접 인사, 감찰부서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한 인사, 감찰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아울러 처리결과를 해관 행정재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109조** 해관 행정재심의 기간의 계산과 행정재심의 법률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기간, 송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방법에서 행정재심의 기간과 관련한 “5일”, “7일” 규정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명절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0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할 때 신청인에게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해관 행정재심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사무용 건물 및 교통, 통신, 모니터링 등 장비는 각급 해관이 보장한다.  **제111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신청하는 해관 행정재심의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112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전문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해관 행정재심의 활동에서 행정재심의 전문인장과 행정재심의기관의 인장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제113조**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해관이 피신청인으로서 행정재심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해관 행정재심의기구는 관련 사건자료를 정리하여 규정에 따라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4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15조** 이 방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8월 30일 해관총서 령 제78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심의법> 시행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复议办法**  2007年9月24日海关总署令第166号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海关行政复议，发挥行政复议制度在解决行政争议、建设法治海关、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中的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以下简称行政复议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以下简称行政复议法实施条例）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海关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向海关提出行政复议申请，海关办理行政复议事项，适用本办法。  **第三条** 各级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认真履行行政复议职责，领导并且支持本海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以下简称海关行政复议机构）依法办理行政复议事项，依照有关规定配备、充实、调剂专职行政复议人员，为行政复议工作提供财政保障，保证海关行政复议机构的办案能力与工作任务相适应。  **第四条** 海关行政复议机构履行下列职责：  （一）受理行政复议申请；  （二）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查阅文件和资料，组织行政复议听证；  （三）审查被申请行政复议的具体行政行为是否合法与适当，拟定行政复议决定，主持行政复议调解，审查和准许行政复议和解；  （四）办理海关行政赔偿事项；  （五）依照行政复议法第三十三条的规定，办理海关行政复议决定的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事项；  （六）处理或者转送申请人依照本办法第三十一条提出的对有关规定的审查申请；  （七）指导、监督下级海关的行政复议工作，依照规定提出复议意见；  （八）对下级海关及其部门和工作人员违反行政复议法、行政复议法实施条例和本办法规定的行为依照规定的权限和程序提出处理建议；  （九）办理或者组织办理不服海关具体行政行为提起行政诉讼的应诉事项；  （十）办理行政复议、行政应诉、行政赔偿案件统计和备案事项；  （十一）研究行政复议过程中发现的问题，及时向有关机关和部门提出建议，重大问题及时向行政复议机关报告；  （十二）其他与行政复议工作有关的事项。  **第五条** 专职从事海关行政复议工作的人员（以下简称行政复议人员）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国家公务员身份；  （二）有良好的政治、业务素质；  （三）高等院校法律专业毕业或者高等院校非法律专业毕业具有法律专业知识；  （四）从事海关工作2年以上；  （五）经考试考核合格取得海关总署颁发的调查证。  各级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支持并且鼓励行政复议人员参加国家司法考试；取得律师资格或者法律职业资格的海关工作人员可以优先成为行政复议人员。  **第六条** 行政复议人员享有下列权利：  （一）依法履行行政复议职责的行为受法律保护；  （二）获得履行职责应当具有的工作条件；  （三）对行政复议工作提出建议；  （四）参加培训；  （五）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规定的其他权利。  行政复议人员应当履行下列义务：  （一）严格遵守宪法和法律；  （二）以事实为根据，以法律为准绳审理行政复议案件；  （三）忠于职守，尽职尽责，清正廉洁，秉公执法；  （四）依法保障行政复议参加人的合法权益；  （五）保守国家秘密、商业秘密、海关工作秘密和个人隐私；  （六）维护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维护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  （七）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规定的其他义务。  **第七条** 海关行政复议机关履行行政复议职责，应当遵循合法、公正、公开、及时、便民的原则，坚持依法行政、有错必纠，保障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的正确实施。  **第八条**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通过宣传栏、公告栏、海关门户网站等方便查阅的形式，公布本海关管辖的行政复议案件受案范围、受理条件、行政复议申请书样式、行政复议案件审理程序和行政复议决定执行程序等事项。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建立和公布行政复议案件办理情况查询机制，方便申请人、第三人及时了解与其行政复议权利、义务相关的信息。  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对申请人、第三人就有关行政复议受理条件、审理方式和期限、作出行政复议处理决定的理由和依据、行政复议决定的执行等行政复议事项提出的疑问予以解释说明。  **第二章 海关行政复议范围**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海关申请行政复议：  （一）对海关作出的警告，罚款，没收货物、物品、运输工具和特制设备，追缴无法没收的货物、物品、运输工具的等值价款，没收违法所得，暂停从事有关业务，撤销注册登记及其他行政处罚决定不服的；  （二）对海关作出的收缴有关货物、物品、违法所得、运输工具、特制设备决定不服的；  （三）对海关作出的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不服的；  （四）对海关作出的扣留有关货物、物品、运输工具、账册、单证或者其他财产，封存有关进出口货物、账簿、单证等行政强制措施不服的；  （五）对海关收取担保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  （六）对海关采取的强制执行措施不服的；  （七）对海关确定纳税义务人、确定完税价格、商品归类、确定原产地、适用税率或者汇率、减征或者免征税款、补税、退税、征收滞纳金、确定计征方式以及确定纳税地点等其他涉及税款征收的具体行政行为有异议的（以下简称纳税争议）；  （八）认为符合法定条件，申请海关办理行政许可事项或者行政审批事项，海关未依法办理的；  （九）对海关检查运输工具和场所，查验货物、物品或者采取其他监管措施不服的；  （十）对海关作出的责令退运、不予放行、责令改正、责令拆毁和变卖等行政决定不服的；  （十一）对海关稽查决定或者其他稽查具体行政行为不服的；  （十二）对海关作出的企业分类决定以及按照该分类决定进行管理的措施不服的；  （十三）认为海关未依法采取知识产权保护措施，或者对海关采取的知识产权保护措施不服的；  （十四）认为海关未依法办理接受报关、放行等海关手续的；  （十五）认为海关违法收取滞报金或者其他费用，违法要求履行其他义务的；  （十六）认为海关没有依法履行保护人身权利、财产权利的法定职责的；  （十七）认为海关在政府信息公开工作中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  （十八）认为海关的其他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  前款第（七）项规定的纳税争议事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应当依据海关法的规定先向海关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海关行政复议决定不服的，再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十条** 海关工作人员不服海关作出的处分或者其他人事处理决定，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提出申诉的，不适用本办法。  **第三章 海关行政复议申请**  **第一节 申请人和第三人**  **第十一条** 依照本办法规定申请行政复议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是海关行政复议申请人。  **第十二条** 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死亡的，其近亲属可以申请行政复议。  **第十三条** 有权申请行政复议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的，承受其权利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申请行政复议。  法人或者其他组织实施违反海关法的行为后，有合并、分立或者其他资产重组情形，海关以原法人、组织作为当事人予以行政处罚并且以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组织作为被执行人的，被执行人可以以自己的名义申请行政复议。  **第十四条** 行政复议期间，海关行政复议机构认为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被审查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应当通知其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行政复议期间，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与被审查的海关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可以向海关行政复议机构申请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申请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的，应当对其与被审查的海关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负举证责任。  通知或者同意第三人参加行政复议的，应当制作《第三人参加行政复议通知书》，送达第三人。  第三人不参加行政复议，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  **第十五条** 申请人、第三人可以委托１至２名代理人参加行政复议。  委托代理人参加行政复议的，应当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交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委托人姓名或者名称，委托人为法人或者其他组织的，还应当载明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二）代理人姓名、性别、年龄、职业、地址及邮政编码；  （三）委托事项和代理期间；  （四）代理人代为提起、变更、撤回行政复议申请、参加行政复议调解、达成行政复议和解、参加行政复议听证、递交证据材料、收受行政复议法律文书等代理权限；  （五）委托日期及委托人签章。  公民在特殊情况下无法书面委托的，可以口头委托。公民口头委托的，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核实并且记录在卷。  申请人、第三人解除或者变更委托的，应当书面报告海关行政复议机构。    **第二节 被申请人和行政复议机关**  **第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海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依照本办法规定申请行政复议的，作出该具体行政行为的海关是被申请人。  **第十七条** 对海关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作出该具体行政行为的海关的上一级海关提出行政复议申请。  对海关总署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海关总署提出行政复议申请。  **第十八条** 两个以上海关以共同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以作出具体行政行为的海关为共同被申请人，向其共同的上一级海关申请行政复议。  **第十九条** 海关与其他行政机关以共同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海关和其他行政机关为共同被申请人，向海关和其他行政机关的共同上一级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  申请人对海关总署与国务院其他部门共同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向海关总署或者国务院其他部门提出行政复议申请，由海关总署、国务院其他部门共同作出处理决定。  **第二十条** 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的规定，下级海关经上级海关批准后以自己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以作出批准的上级海关为被申请人。  根据海关法和有关行政法规、海关规章的规定，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后作出的具体行政行为，以直属海关为被申请人。  **第二十一条** 海关设立的派出机构、内设机构或者其他组织，未经法律、行政法规授权，对外以自己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以该海关为被申请人，向该海关的上一级海关申请行政复议。  **第三节 行政复议申请期限**  **第二十二条**　海关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作出具体行政行为，应当告知其申请行政复议的权利、行政复议机关和行政复议申请期限。  对于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的规定，下级海关经上级海关批准后以自己的名义作出的具体行政行为，应当告知以作出批准的上级海关为被申请人以及相应的行政复议机关。  **第二十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海关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自知道该具体行政行为之日起60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  前款规定的行政复议申请期限依照下列规定计算：  （一）当场作出具体行政行为的，自具体行政行为作出之日起计算；  （二）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直接送达的，自受送达人签收之日起计算；  （三）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依法留置送达的，自送达人和见证人在送达回证上签注的留置送达之日起计算；  （四）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邮寄送达的，自受送达人在邮政签收单上签收之日起计算；没有邮政签收单的，自受送达人在送达回执上签名之日起计算；  （五）具体行政行为依法通过公告形式告知受送达人的，自公告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计算；  （六）被申请人作出具体行政行为时未告知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事后补充告知的，自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收到补充告知的通知之日起计算；  （七）被申请人作出具体行政行为时未告知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但是有证据材料能够证明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知道该具体行政行为的，自证据材料证明其知道具体行政行为之日起计算。  具体行政行为具有持续状态的，自该具体行政行为终了之日起计算。  海关作出具体行政行为，依法应当向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送达法律文书而未送达的，视为该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  申请人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法定申请期限的，申请期限自障碍消除之日起继续计算。  **第二十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海关未依法履行法定职责，依照本办法第九条第一款第（八）项、第（十六）项的规定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申请期限依照下列规定计算：  （一）履行职责的期限有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的明确规定的，自规定的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二）履行职责的期限没有明确规定的，自海关收到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要求履行职责的申请满60日起计算。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紧急情况下请求海关履行保护人身权、财产权的法定职责，海关不及时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不受前款规定的限制。  **第二十五条**　本办法第九条第一款第（七）项规定的纳税争议事项，申请人未经行政复议直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依法驳回后申请人再向海关申请行政复议的，从申请人起诉之日起至人民法院驳回的法律文书生效之日止的期间不计算在申请行政复议的期限内，但是海关作出有关具体行政行为时已经告知申请人应当先经海关行政复议的除外。  **第四节 行政复议申请的提出**  **第二十六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可以采取当面递交、邮寄、传真、电子邮件等方式递交行政复议申请书。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通过海关公告栏、互联网门户网站公开接受行政复议申请书的地址、传真号码、互联网邮箱地址等，方便申请人选择不同的书面申请方式。  **第二十七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申请书中载明下列内容：  （一）申请人基本情况，包括：公民的姓名、性别、年龄、工作单位、住所、身份证号码、邮政编码；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邮政编码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二）被申请人的名称；  （三）行政复议请求、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和理由；  （四）申请人签名或者盖章；  （五）申请行政复议的日期。  **第二十八条** 申请人口头申请行政复议的，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依照本办法第二十七条规定的内容，当场制作《行政复议申请笔录》交申请人核对或者向申请人宣读，并且由其签字确认。  **第二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人应当提供相应的证明材料：  （一）认为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提供曾经申请被申请人履行法定职责的证明材料；  （二）申请行政复议时一并提出行政赔偿申请的，提供受具体行政行为侵害而造成损害的证明材料；  （三）属于本办法第二十三条第五款情形的，提供发生不可抗力或者有其他正当理由的证明材料；  （四）法律、行政法规规定需要申请人提供证据材料的其他情形。  **第三十条** 申请人提出行政复议申请时错列被申请人的，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告知申请人变更被申请人。  申请人变更被申请人的期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第三十一条** 申请人认为海关的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规定不合法，可以依据行政复议法第七条的规定，在对具体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时一并提出对该规定的审查申请。  申请人在对具体行政行为提起行政复议申请时尚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规定的，可以在海关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前提出。  **第四章 海关行政复议受理**  **第三十二条** 海关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后，应当在5日内进行审查。行政复议申请符合下列规定的，应当予以受理：  （一）有明确的申请人和符合规定的被申请人；  　 （二）申请人与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  　 （三）有具体的行政复议请求和理由；  　 （四）在法定申请期限内提出；  　 （五）属于本办法第九条第一款规定的行政复议范围；  　 （六）属于收到行政复议申请的海关行政复议机构的职责范围；  （七）其他行政复议机关尚未受理同一行政复议申请，人民法院尚未受理同一主体就同一事实提起的行政诉讼。  对符合前款规定决定受理行政复议申请的，应当制作《行政复议申请受理通知书》和《行政复议答复通知书》分别送达申请人和被申请人。《行政复议申请受理通知书》应当载明受理日期、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告知申请人申请回避和申请举行听证的权利。《行政复议答复通知书》应当载明受理日期、提交答复的要求和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告知被申请人申请回避的权利。  对不符合本条第一款规定决定不予受理的，应当制作《行政复议申请不予受理决定书》，并且送达申请人。《行政复议申请不予受理决定书》应当载明不予受理的理由和法律依据，告知申请人主张权利的其他途径。  **第三十三条**　行政复议申请材料不齐全或者表述不清楚的，海关行政复议机构可以自收到该行政复议申请之日起5日内书面通知申请人补正。补正通知应当载明以下事项：  （一）行政复议申请书中需要修改、补充的具体内容；  （二）需要补正的有关证明材料的具体类型及其证明对象；  （三）补正期限。  申请人应当在收到补正通知之日起10日内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交需要补正的材料。补正申请材料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补正的，视为其放弃行政复议申请。申请人有权在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的期限内重新提出行政复议申请。  **第三十四条**　申请人以传真、电子邮件方式递交行政复议申请书、证明材料的，海关行政复议机构不得以其未递交原件为由拒绝受理。  海关行政复议机构受理申请人以传真、电子邮件方式提出的行政复议申请后，应当告知申请人自收到《行政复议申请受理通知书》之日起10日内提交有关材料的原件。  **第三十五条**　对符合本办法规定，且属于本海关受理的行政复议申请，自海关行政复议机构收到之日起即为受理。  海关行政复议机构收到行政复议申请的日期，属于申请人当面递交的，由海关行政复议机构经办人在申请书上注明收到日期，并且由递交人签字确认；属于直接从邮递渠道收取或者其他单位、部门转来的，由海关行政复议机构签收确认；属于申请人以传真或者电子邮件方式提交的，以海关行政复议机构接收传真之日或者海关互联网电子邮件系统记载的收件日期为准。  **第三十六条**　对符合本办法规定，但是不属于本海关管辖的行政复议申请，应当在审查期限内转送有管辖权的海关行政复议机关，并且告知申请人。口头告知的，应当记录告知的有关内容，并且当场交由申请人签字或者盖章确认；书面告知的，应当制作《行政复议告知书》，并且送达申请人。  **第三十七条**　申请人就同一事项向两个或者两个以上有权受理的海关申请行政复议的，由最先收到行政复议申请的海关受理；同时收到行政复议申请的，由收到行政复议申请的海关在10日内协商确定；协商不成的，由其共同上一级海关在10日内指定受理海关。协商确定或者指定受理海关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第三十八条**　申请人依法提出行政复议申请，海关行政复议机关无正当理由不予受理的，上一级海关可以根据申请人的申请或者依职权先行督促其受理；经督促仍不受理的，应当责令其限期受理，并且制作《责令受理行政复议申请通知书》；必要时，上一级海关也可以直接受理，并且制作《直接受理行政复议申请通知书》，送达申请人和原海关行政复议机关。上一级海关经审查认为海关行政复议机关不予受理行政复议申请的决定符合本办法规定的，应当向申请人做好说明解释工作。  **第三十九条**　下列情形不视为申请行政复议，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给予答复，或者转由其他机关处理并且告知申请人：  （一）对海关工作人员的个人违法违纪行为进行举报、控告或者对海关工作人员的态度作风提出异议的；  （二）对海关的业务政策、作业制度、作业方式和程序提出异议的；  （三）对海关工作效率提出异议的；  （四）对行政处罚认定的事实、适用的法律及处罚决定没有异议，仅因经济上不能承受而请求减免处罚的；  （五）不涉及海关具体行政行为，只对海关规章或者其他规范性文件有异议的；  （六）请求解答法律、行政法规、规章的。  **第四十条**　行政复议期间海关具体行政行为不停止执行；但是有行政复议法第二十一条规定情形之一的，可以停止执行。决定停止执行的，应当制作《具体行政行为停止执行决定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四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合并审理，并且以后一个申请行政复议的日期为正式受理的日期：  （一） 两个以上的申请人对同一海关具体行政行为分别向海关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的；  （二） 同一申请人对同一海关的数个相同类型或者具有关联性的具体行政行为分别向海关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的。  **第五章 海关行政复议审理与决定**  **第一节 行政复议答复**  **第四十二条** 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自受理行政复议申请之日起7日内，将行政复议申请书副本或者行政复议申请笔录复印件以及申请人提交的证据、有关材料的副本发送被申请人。  **第四十三条** 被申请人应当自收到申请书副本或者行政复议申请笔录复印件之日起10日内，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交《行政复议答复书》，并且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行政复议答复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被申请人名称、地址、法定代表人姓名及职务；  （二）被申请人作出具体行政行为的事实、证据、理由及法律依据；  （三）对申请人的行政复议申请要求、事实、理由逐条进行答辩和必要的举证；  （四）对有关具体行政行为建议维持、变更、撤销或者确认违法，建议驳回行政复议申请，进行行政复议调解等答复意见；  （五）作出答复的时间。  《行政复议答复书》应当加盖被申请人印章。  被申请人提交的有关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应当按照规定装订成卷。  **第四十四条** 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在收到被申请人提交的《行政复议答复书》之日起7日内，将《行政复议答复书》副本发送申请人。  **第四十五条** 行政复议案件的答复工作由被申请人负责法制工作的机构具体负责。  对海关总署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向海关总署申请行政复议的，由原承办具体行政行为有关事项的部门或者机构具体负责提出书面答复，并且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第二节 行政复议审理**  **第四十六条** 海关行政复议案件实行合议制审理。合议人员为不得少于3人的单数。合议人员由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指定的行政复议人员或者海关行政复议机构聘任或者特邀的其他具有专业知识的人员担任。  被申请人所属人员不得担任合议人员。对海关总署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向海关总署申请行政复议的，原具体行政行为经办部门的人员不得担任合议人员。  对于事实清楚、案情简单、争议不大的海关行政复议案件，也可以不适用合议制，但是应当由2名以上行政复议人员参加审理。  **第四十七条** 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应当指定一名行政复议人员担任主审，具体负责对行政复议案件事实的审查，并且对所认定案件事实的真实性和适用法律的准确性承担主要责任。  合议人员应当根据复议查明的事实，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的规定，提出合议意见，并且对提出的合议意见的正确性负责。  **第四十八条**　申请人、被申请人或者第三人认为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与本案有利害关系或者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审理行政复议案件的，可以申请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回避，同时应当说明理由。  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认为自己与本案有利害关系或者有其他关系的，应当主动申请回避。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也可以指令合议人员或者案件审理人员回避。  行政复议人员的回避由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决定。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的回避由海关行政复议机关负责人决定。  **第四十九条** 海关行政复议机构审理行政复议案件应当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情况，听取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的意见；海关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可以实地调查核实证据；对于事实清楚、案情简单、争议不大的案件，可以采取书面审查的方式进行审理。  **第五十条** 海关行政复议机构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时，可以查阅、复制、调取有关文件和资料，向有关人员进行询问。  调查取证时，行政复议人员不得少于2人，并且应当主动向有关人员出示调查证。被调查单位和人员应当配合行政复议人员的工作，不得拒绝或者阻挠。  　 调查情况、听取意见应当制作笔录，由被调查人员和行政复议人员共同签字确认。  **第五十一条**　行政复议期间涉及专门事项需要鉴定的，申请人、第三人可以自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也可以申请行政复议机构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鉴定费用由申请人、第三人承担。鉴定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海关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也可以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  鉴定应当委托国家认可的鉴定机构进行。  **第五十二条** 需要现场勘验的，现场勘验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第五十三条**　申请人、第三人可以查阅被申请人提出的书面答复、提交的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海关工作秘密或者个人隐私外，海关行政复议机关不得拒绝,并且应当为申请人、第三人查阅有关材料提供必要条件。  有条件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设立专门的行政复议接待室或者案卷查阅室，配备相应的监控设备。  **第五十四条**　申请人、第三人查阅有关材料依照下列规定办理：  （一）申请人、第三人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出阅卷要求；  （二）海关行政复议机构确定查阅时间后提前通知申请人或者第三人；  （三）查阅时，申请人、第三人应当出示身份证件；  （四）查阅时，海关行政复议机构工作人员应当在场；  （五）申请人、第三人可以摘抄查阅材料的内容；  （六）申请人、第三人不得涂改、毁损、拆换、取走、增添查阅的材料。  **第五十五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影响行政复议案件审理的，行政复议中止，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制作《行政复议中止决定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一）作为申请人的自然人死亡，其近亲属尚未确定是否参加行政复议的；  　 （二）作为申请人的自然人丧失参加行政复议的能力，尚未确定法定代理人参加行政复议的；  　 （三）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尚未确定权利义务承受人的；  　（四）作为申请人的自然人下落不明或者被宣告失踪的；  　 （五）申请人、被申请人因不可抗力，不能参加行政复议的；  　 （六）案件涉及法律适用问题，需要有权机关作出解释或者确认的；  　 （七）案件审理需要以其他案件的审理结果为依据，而其他案件尚未审结的；  　 （八）申请人依照本办法第三十一条提出对有关规定的审查申请，有权处理的海关、行政机关正在依法处理期间的；  （九）其他需要中止行政复议的情形。  　 行政复议中止的原因消除后，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及时恢复行政复议案件的审理，制作《行政复议恢复审理通知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三节 行政复议听证**  **第五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行政复议机构可以采取听证的方式审理：  （一）申请人提出听证要求的；  （二）申请人、被申请人对事实争议较大的；  （三）申请人对具体行政行为适用依据有异议的；  （四）案件重大、复杂或者争议的标的价值较大的；  （五）海关行政复议机构认为有必要听证的其他情形。  **第五十七条** 海关行政复议机构决定举行听证的，应当制发《行政复议听证通知书》，将举行听证的时间、地点、具体要求等事项事先通知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三人不参加听证的，不影响听证的举行。  **第五十八条** 听证可以在海关行政复议机构所在地举行，也可以在被申请人或者申请人所在地举行。  **第五十九条** 行政复议听证应当公开举行，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海关工作秘密或者个人隐私的除外。  公开举行的行政复议听证，因听证场所等原因需要限制旁听人员数量的，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作出说明。  对人民群众广泛关注、有较大社会影响或者有利于法制宣传教育的行政复议案件的公开听证，海关行政复议机构可以有计划地组织群众旁听，也可以邀请有关立法机关、司法机关、监察部门、审计部门、新闻单位以及其他有关单位的人员参加旁听。  **第六十条** 行政复议听证人员为不得少于3人的单数，由海关行政复议机构负责人确定，并且指定其中一人为听证主持人。听证可以另指定专人为记录员。  **第六十一条** 行政复议听证应当按照以下程序进行：  （一）由主持人宣布听证开始、核对听证参加人身份、告知听证参加人的权利和义务；  （二）询问听证参加人是否申请听证人员以及记录员回避，申请回避的，按照本办法第四十八条的规定办理；  （三）申请人宣读复议申请并且阐述主要理由；  （四）被申请人针对行政复议申请进行答辩，就作出原具体行政行为依据的事实、理由和法律依据进行阐述，并且进行举证；  （五）第三人可以阐述意见；  （六）申请人、第三人对被申请人的举证可以进行质证或者举证反驳，被申请人对申请人、第三人的反证也可以进行质证和举证反驳；  （七）要求证人到场作证的，应当事先经海关行政复议机构同意并且提供证人身份等基本情况；  （八）听证主持人和其他听证人员进行询问；  （九）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没有异议的证据和证明的事实，由主持人当场予以认定；有异议的并且与案件处理结果有关的事实和证据，由主持人当场或者事后经合议予以认定；  （十）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可以对案件事实、证据、适用法律等进行辩论；  （十一）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进行最后陈述；  （十二）由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对听证笔录内容进行确认，并且当场签名或者盖章；对听证笔录内容有异议的，可以当场更正并且签名或者盖章。  行政复议听证笔录和听证认定的事实应当作为海关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的依据。  **第六十二条** 行政复议参加人无法在举行听证时当场提交有关证据的，由主持人根据具体情况限定时间事后提交并且另行进行调查、质证或者再次进行听证；行政复议参加人提出的证据无法当场质证的，由主持人当场宣布事后进行调查、质证或者再次进行听证。  行政复议参加人在听证后的举证未经质证或者未经海关行政复议机构重新调查认可的，不得作为作出行政复议决定的证据。  **第四节 行政复议附带抽象行政行为审查**  **第六十三条** 申请人依照本办法第三十一条提出对有关规定的审查申请的，海关行政复议机关对该规定有权处理的，应当在30日内依照下列程序处理：  （一）依法确认该规定是否与法律、行政法规、规章相抵触；  （二）依法确认该规定能否作为被申请人作出具体行政行为的依据；  （三）书面告知申请人对该规定的审查结果。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制作《抽象行政行为审查告知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  **第六十四条** 海关行政复议机关对申请人申请审查的有关规定无权处理的，应当在7日内按照下列程序转送有权处理的上级海关或者其他行政机关依法处理：  （一）转送有权处理的上级海关的，应当报告行政复议有关情况、执行该规定的有关情况、对该规定适用的意见；  （二）转送有权处理的其他行政机关的，在转送函中应当说明行政复议的有关情况、请求确认该规定是否合法。  **第六十五条** 有权处理的上级海关应当在60日内依照下列程序处理：  （一）依法确认该规定是否合法、有效；  （二）依法确认该规定能否作为被申请人作出具体行政行为的依据；  （三）制作《抽象行政行为审查告知书》，并且送达海关行政复议机关、申请人和被申请人。  **第六十六条** 海关行政复议机关在对被申请人作出的具体行政行为进行审查时，认为需对该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有关规定进行审查的，依照本办法第六十三条、第六十四条、第六十五条的规定办理。    **第五节 行政复议决定**  **第六十七条** 海关行政复议机构提出案件处理意见，经海关行政复议机关负责人审查批准后，作出行政复议决定。  **第六十八条**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行政复议决定。但是有下列情况之一的，经海关行政复议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30日：  （一）行政复议案件案情重大、复杂、疑难的；  （二）决定举行行政复议听证的；  （三）经申请人同意的；  （四）有第三人参加行政复议的；  （五）申请人、第三人提出新的事实或者证据需进一步调查的。  海关行政复议机关延长复议期限，应当制作《延长行政复议审查期限通知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六十九条**　具体行政行为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适用依据正确，程序合法，内容适当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维持。  **第七十条** 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其在一定期限内履行法定职责。  **第七十一条**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变更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  （一）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的；  （二）适用依据错误的；  （三）违反法定程序的；  （四）超越或者滥用职权的；  （五）具体行政行为明显不当的。  **第七十二条** 海关行政复议机关决定撤销或者确认具体行政行为违法的，可以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  被申请人应当在法律、行政法规、海关规章规定的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法律、行政法规、海关规章未规定期限的，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期限为60日。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被申请人重新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七十三条** 被申请人未按照本办法第四十三条的规定提出书面答复、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的，视为该具体行政行为没有证据、依据，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  **第七十四条**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变更：  （一）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但是明显不当或者适用依据错误的；  （二）认定事实不清，证据不足，但是经海关行政复议机关审理查明事实清楚，证据确凿的。  **第七十五条**海关行政复议机关在申请人的行政复议请求范围内，不得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行政复议决定。  **第七十六条**　海关行政复议机关依据本办法第七十二条规定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除以下情形外，被申请人不得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具体行政行为：  （一）不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具体行政行为将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的；  （二）原具体行政行为适用法律依据错误，适用正确的法律依据需要依法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具体行政行为的；  （三）被申请人查明新的事实，根据新的事实和有关法律、行政法规、海关规章的强制性规定，需要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具体行政行为的；  （四）其他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规定应当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具体行政行为的。  **第七十七条** 海关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应当制作《行政复议决定书》，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行政复议决定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申请人姓名、性别、年龄、职业、住址（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二）第三人姓名、性别、年龄、职业、住址（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三）被申请人名称、地址、法定代表人姓名；  （四）申请人申请复议的请求、事实和理由；  （五）被申请人答复的事实、理由、证据和依据；  （六）行政复议认定的事实和相应的证据；  （七）作出行政复议决定的具体理由和法律依据；  （八）行政复议决定的具体内容；  （九）不服行政复议决定向人民法院起诉的期限和具体管辖法院；  （十）作出行政复议决定的日期。  《行政复议决定书》应当加盖海关行政复议机关的印章。  《行政复议决定书》一经送达，即发生法律效力。  《行政复议决定书》直接送达的，行政复议人员应当就行政复议认定的事实、证据、作出行政复议决定的理由、依据向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作出说明；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对《行政复议决定书》提出异议的，除告知其向人民法院起诉的权利外，应当就有关异议作出解答。《行政复议决定书》以其他方式送达的，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就《行政复议决定书》有关内容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出异议的，行政复议人员应当向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作出说明。  经申请人和第三人同意，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通过出版物、海关门户网站、海关公告栏等方式公布生效的行政复议法律文书。  **第七十八条**　《行政复议决定书》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后，海关行政复议机关发现《行政复议决定书》有需要补充、更正的内容，但是不影响行政复议决定的实质内容的，应当制发《行政复议决定补正通知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七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驳回行政复议申请：  （一）申请人认为海关不履行法定职责申请行政复议，海关行政复议机关受理后发现被申请人没有相应法定职责或者被申请人在海关行政复议机关受理该行政复议申请之前已经履行法定职责的；  （二）海关行政复议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后，发现该行政复议申请不符合受理条件的。  　 海关行政复议机关的上一级海关认为该行政复议机关驳回行政复议申请的理由不成立的，应当责令其恢复审理。  **第八十条**　申请人在行政复议决定作出前自愿撤回行政复议申请的，经海关行政复议机构同意，可以撤回。  申请人撤回行政复议申请的，不得再以同一事实和理由提出行政复议申请。但是，申请人能够证明撤回行政复议申请违背其真实意思表示的除外。  **第八十一条**　行政复议期间被申请人改变原具体行政行为，但是申请人未依法撤回行政复议申请的，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  **第八十二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终止：  　　（一）申请人要求撤回行政复议申请，海关行政复议机构准予撤回的；  　　（二）作为申请人的自然人死亡，没有近亲属或者其近亲属放弃行政复议权利的；  　　（三）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其权利义务的承受人放弃行政复议权利的；  　　（四）申请人与被申请人达成和解，并且经海关行政复议机构准许的；  　　（五）申请人对海关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后，因申请人同一违法行为涉嫌犯罪，该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变更为刑事拘留的，或者申请人对海关扣留财产的行政强制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后，因申请人同一违法行为涉嫌犯罪，该扣留财产的行政强制措施变更为刑事扣押的；  （六）依照本办法第五十五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中止行政复议，满60日行政复议中止的原因仍未消除的；  （七）申请人以传真、电子邮件形式递交行政复议申请书后未在规定期限内提交有关材料的原件的。  行政复议终止，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制作《行政复议终止决定书》，并且送达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六节 行政复议和解和调解**  **第八十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海关行使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规定的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在海关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之前，申请人和被申请人可以在自愿、合法基础上达成和解。  **第八十四条** 申请人和被申请人达成和解的，应当向海关行政复议机构提交书面和解协议。和解协议应当载明行政复议请求、事实、理由和达成和解的结果，并且由申请人和被申请人签字或者盖章。  **第八十五条** 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对申请人和被申请人提交的和解协议进行审查，和解确属申请人和被申请人的真实意思表示，和解内容不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的强制性规定，不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应当准许和解，并且终止行政复议案件的审理。  准许和解并且终止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终止决定书》中载明和解的内容。  **第八十六条** 经海关行政复议机关准许和解的，申请人和被申请人应当履行和解协议。  **第八十七条** 经海关行政复议机关准许和解并且终止行政复议的，申请人以同一事实和理由再次申请行政复议的，不予受理。但是，申请人提出证据证明和解违反自愿原则或者和解内容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的强制性规定的除外。  **第八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按照自愿、合法的原则进行调解：  （一）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海关行使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规章规定的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  （二）行政赔偿、查验赔偿或者行政补偿纠纷。  **第八十九条** 海关行政复议机关主持调解应当符合以下要求：  （一）调解应当在查明案件事实的基础上进行；  （二）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充分尊重申请人和被申请人的意愿；  （三）组织调解应当遵循公正、合理原则；  （四）调解结果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的规定，不得违背法律精神和原则；  （五）调解结果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  **第九十条** 海关行政复议机关主持调解应当按照下列程序进行：  （一）征求申请人和被申请人是否同意进行调解的意愿；  （二）经申请人和被申请人同意后开始调解；  （三）听取申请人和被申请人的意见；  （四）提出调解方案；  （五）达成调解协议。  调解期间申请人或者被申请人明确提出不进行调解的，应当终止调解。终止调解后，申请人、被申请人再次请求海关行政复议机关主持调解的，应当准许。  **第九十一条** 申请人和被申请人经调解达成协议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制作《行政复议调解书》。《行政复议调解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申请人姓名、性别、年龄、职业、住址（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二）被申请人名称、地址、法定代表人姓名；  （三）申请人申请行政复议的请求、事实和理由；  （四）被申请人答复的事实、理由、证据和依据；  （五）行政复议认定的事实和相应的证据；  （六）进行调解的基本情况；  （七）调解结果；  （八）申请人、被申请人履行调解书的义务；  （九）日期。  《行政复议调解书》应当加盖海关行政复议机关的印章。《行政复议调解书》经申请人、被申请人签字或者盖章，即具有法律效力。  **第九十二条** 申请人和被申请人提交书面和解协议，并且要求海关行政复议机关按照和解协议内容制作《行政复议调解书》的，行政复议机关应当进行审查，申请人和被申请人达成的和解协议符合本办法第八十九条第（四）项、第（五）项规定的，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根据和解协议的内容按照本办法第九十一条的规定制作《行政复议调解书》。  **第九十三条** 调解未达成协议或者行政复议调解书生效前一方反悔的，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及时作出行政复议决定。  **第七节 行政复议决定的执行**  **第九十四条** 申请人认为被申请人不履行或者无正当理由拖延履行行政复议决定书、行政复议调解书的，可以申请海关行政复议机关责令被申请人履行。  海关行政复议机关发现被申请人不履行或者无正当理由拖延履行行政复议决定书、行政复议调解书的，应当责令其限期履行，并且制作《责令限期履行行政复议决定通知书》，送达被申请人。  **第九十五条** 申请人在法定期限内未提起行政诉讼又不履行海关行政复议决定的，按照下列规定分别处理：  （一）维持具体行政行为的海关行政复议决定，由作出具体行政行为的海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二）变更具体行政行为的海关行政复议决定，由海关行政复议机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海关行政复议机关也可以指定作出具体行政行为的海关依法强制执行，被指定的海关应当及时将执行情况上报海关行政复议机关。  **第九十六条** 申请人不履行行政复议调解书的，由作出具体行政行为的海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六章　海关行政复议指导和监督**  **第九十七条**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加强对行政复议工作的领导。  海关行政复议机构按照职责权限对行政复议工作进行督促、指导。  **第九十八条** 上级海关应当加强对下级海关履行行政复议职责的监督，通过定期检查、抽查等方式，对下级海关的行政复议工作进行检查，并且及时反馈检查结果。  海关发现本海关或者下级海关作出的行政复议决定有错误的，应当予以纠正。  **第九十九条** 海关行政复议机关在行政复议期间发现被申请人的具体行政行为违法或者需要做好善后工作的，可以制作《行政复议意见书》，对被申请人纠正执法行为、改进执法工作提出具体意见。  被申请人应当自收到《行政复议意见书》之日起60日内将纠正相关行政违法行为或者做好善后工作的情况报告海关行政复议机构。  **第一百条**　海关行政复议机构在行政复议期间发现法律、行政法规、规章的实施中带有普遍性的问题，可以向有关机关提出完善立法的建议。  海关行政复议机构在行政复议期间发现海关执法中存在的普遍性问题，可以制作《行政复议建议书》，向本海关有关业务部门提出改进执法的建议；对于可能对本海关行政决策产生重大影响的问题，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将《行政复议建议书》报送本级海关行政首长；属于上一级海关处理权限的问题，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向上一级海关提出完善制度和改进执法的建议。  **第一百零一条**　各级海关行政复议机关办理的行政复议案件中，申请人与被申请人达成和解协议后海关行政复议机关终止行政复议，或者申请人与被申请人经调解达成协议，海关行政复议机关制作行政复议调解书的，应当向海关总署行政复议机构报告，并且将有关法律文书报该部门备案。  **第一百零二条**　海关行政复议机构在办理行政复议案件的过程中，应当及时将制发的有关法律文书在海关行政复议信息系统中备案。  **第一百零三条**　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每半年向本海关和上一级海关行政复议机构提交行政复议工作状况分析报告。  **第一百零四条**　海关总署行政复议机构应当每半年组织一次对行政复议人员的业务培训，提高行政复议人员的专业素质。  其他海关行政复议机构可以根据工作需要定期组织对本海关行政复议人员的培训。  **第一百零五条**　海关行政复议机关对于在办理行政复议案件中依法保障国家利益、维护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促进海关依法行政和社会和谐、成绩显著的单位和人员，应当依照《海关系统奖励规定》给予表彰和奖励。  海关行政复议机关应当定期总结行政复议工作，对在行政复议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应当依照《海关系统奖励规定》给予表彰和奖励。  **第七章 法律责任**  **第一百零六条**　海关行政复议机关、海关行政复议机构、行政复议人员有行政复议法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行政复议法实施条例第六十四条规定情形的，依照行政复议法、行政复议法实施条例的有关规定处理。  **第一百零七条**　被申请人有行政复议法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行政复议法实施条例第六十二条规定情形的，依照行政复议法、行政复议法实施条例的有关规定处理。  **第一百零八条**　上级海关发现下级海关及有关工作人员有违反行政复议法、行政复议法实施条例和本办法规定的，应当制作《处理违法行为建议书》，向有关海关提出建议，该海关应当依照行政复议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作出处理，并且将处理结果报告上级海关。  海关行政复议机构发现有关海关及其工作人员有违反行政复议法、行政复议法实施条例和本办法规定的，应当制作《处理违法行为建议书》，向人事、监察部门提出对有关责任人员的处分建议，也可以将有关人员违法的事实材料直接转送人事、监察部门处理；接受转送的人事、监察部门应当依法处理，并且将处理结果通报转送的海关行政复议机构。  **第八章 附 则**  **第一百零九条**　海关行政复议期间的计算和行政复议法律文书的送达，依照民事诉讼法关于期间、送达的规定执行。  本办法关于行政复议期间有关“5日”、“7日”的规定是指工作日，不含节假日。  **第一百一十条**　海关行政复议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不得向申请人收取任何费用。  海关行政复议活动所需经费、办公用房以及交通、通讯、监控等设备由各级海关予以保障。  **第一百一十一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海关申请行政复议，适用本办法。  **第一百一十二条**　海关行政复议机关可以使用行政复议专用章。在海关行政复议活动中，行政复议专用章和行政复议机关的印章具有同等法律效力。  **第一百一十三条**　海关行政复议机关办理行政复议案件、海关作为被申请人参加行政复议活动，该海关行政复议机构应当对有关案件材料进行整理，按照规定立卷归档。  **第一百一十四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一百一十五条**　本办法自2007年11月1日起施行。1999年8月30日海关总署令第78号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行政复议法〉办法》同时废止。 |